

2023년도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과업지시서**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I.	설	계	설	명	서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IV.	보	안	대	책	
V.	기	타	사	항	
VI.	예	정	공	정	표
VII.	설	계	예	산	서
VIII.	수	량	산	출	서
IX.	과	업	위	치	도

I . 설 계 설 명 서

I .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나. 연장 : 8.86km, 폭 11.5m(2차로)

4. 과업 기간 : 15개월(450일)

5. 과업의 범위

일반해역이용협의 1식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사업계획 예정 구간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등의 자연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수치모델링을 수행, 예측·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인·허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일반해역이용협의

- 1) 요약문
-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4) 지역개황
- 5) 평가항목 설정
-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필요 시)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6) 자금조달계획서

7)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 조사

·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수치모델링

8)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

- 3) 면허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4) 손실보상,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또는 매립공사 착수동의 증명 서류
- 5) 매립공사설명서
-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 7) 예정공정표
- 8) 채취장 확보 증명서류
- 9)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서류
- 10) 신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11) 보고서 작성 및 협의

3. 과업의 일반지침

- 가.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일반해역이용협의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허가·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한다.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를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한다.

5) 평가항목의 설정

당해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

(2) 영향예측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해양물리(해수유동, 오염 확산, 침·퇴적 등)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해양화학, 해양퇴적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한다.

(3)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검토하여 제시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8) 부록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 (1)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 2022.2.4.)」에 따라 작성한다.
- (2)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행한다.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필요 시)

1)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 배경 및 목적, 매립의 타당성, 위치도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매립의 필요성, 매립에 수반되는 재료원 확보계획, 매립공사 설계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제시한다.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요청지역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 제한 정도 등 도시계획이나 관련 국가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한다.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매립 전·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고용유발효과, 매립에 대한 시공비용 및 사업비용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재원소요계획과 조달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다.

7)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 조사

요청지역 인근의 어업권 현황,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요청지역의 안정성 등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하여 제시하며, 매립에 의한 주변 환경영향 파악을 위해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수치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및 협의

-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고시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계획서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손실보상,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또는 매립공사 착수동의 증명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채취장 확보 증명서류

9)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서류

10) 신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협의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행한다.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III.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 가. 조사 구간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 본 용역의 용역비의 경우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3.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 등은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해역이용협의서 : 10부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필요 시) : 1식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필요 시) : 1식
- 기타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 사진첩 : 1부
- CD(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 4장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IV.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게 한하며,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8. 용역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9.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0.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용역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1.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V. 기 타 사 항

V.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사업책임 및 분야책임에 한함)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과 연계되는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과업 수행 과정(비교노선 선정, 평면 및 종단면도 계획, 횡단면도 구성, 구조물계획 등)에서 요구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I.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illegible]

VII. 설 계 예 산 서

VIII. 수 량 산 출 서

IX. 과 업 위 치 도

□ 위치도

